

2015년도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공모안내

2015. 5. 8.



보건복지부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목 차

I. 일반현황

1. 추진개요	1
2. 공모계획	3
3. 향후일정	4

II.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6
2. 세부 추진계획	7

III.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14
2. 신청방법	19

IV. 평가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 선정	25
2. 연구사업 관리	28

[별첨 1] 2015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35
------------------------------------	----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45
---------------------------	----

[별첨 3] 업무별 담당자 안내	46
-------------------------	----

2015년도 보건 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공모안내

I . 일반현황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 보건의료 R&D 정책방향

국민(환자) 중심의 R&D로 전환 및 국민적 책임성 제고, 보건의료 R&D 연구(기술)성과의 산업화 촉진

비전

「국민건강 G7 선진국 도약」 “2020 건강수명 75세 시대” 달성

목표

- ① 정부 R&D 중 건강 R&D 투자 비중 확대
- ② R&D 기술 수준 : ('11) 72.6% → ('17) 75%
- ③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 제약 산업 : ('11) 0.4% → ('20) 3.8%
 - 의료기기 산업 : ('13) 1.2% → ('20) 3.8%

기본방향(HEALTH)

① 건강수명 연장

① **Healing** 주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② 신성장동력 창출

② **Economy**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 확대

③ 국민행복 실현

③ **Alert**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④ **better life** 건강증진(Well-being)/돌봄(Care) 기술 투자 확대

④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조성

⑤ **UniogetHer** 산·학·연·병원 선순환 체계 구축

5대 추진전략

1 (투자) 보건의료 R&D 투자 비중 확대

2 (사업화) 보건의료 R&D 기술사업화 촉진

3 (성과관리) 보건의료 R&D 성과관리 혁신

4 (관리프로세스) 보건의료 R&D 전문기관 관리프로세스 일원화로 투명성·전문성 제고

5 (인프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HEALTH)

① (H)ealing)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해 예방·진단·치료기술의 완성 단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중개연구, 임상연구, 한의약 등

② (E)conomy)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유망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한 지원
 - 신약,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의료기기, 유전체, 줄기세포, 융복합, 화장품 등

③ (A)lert)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
 - 감염병위기대응, 공공보건 등

④ (better L)ife) 건강증진(Well-being) 및 돌봄(Care)기술 투자 확대

- 일상생활자의 건강한 삶을 지속시키는 건강증진 기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돌봄 기술과 같이 생애 전주기에 걸친 다양한 기술 개발 지원
 - 정신건강, 100세사회대응, 보건의료서비스R&D, 사회서비스R&D 등

⑤ (T)oget(He)rer) 산·학·연·병원 선순환 체계 구축

- 보건의료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R&D 인프라 구축 지원
 - 연구중심병원육성, 임상의과학역량강화, 선도형특성화연구 등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 질환유효성평가센터사업('10~'14) 종료 후, '15년부터 「보건의료 T2B (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으로 신규 추진

□ 지원목적

- 개방형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통해 HT/BT 연구성과의 제품화 단절현상을 해소하여 실용화 촉진
 - 글로벌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기반구축을 통한 국내 보건의료 산업 제품의 국외진출 촉진 및 해외 유효성평가 수주 확대

□ 지원분야

- HT/BT 제품화를 위한 초기 비임상 유효성평가 단계 집중 지원
 - 신약 후보물질의 치료효과 검증, 진단용 의약품 및 초기 시제품 형태의 의료기기 유효성평가, 기능성식품·화장품의 유효성분 효능평가
 - 주요 13개 질환분야 중 1개 질환 분야를 선택

1. 감염성 질환, 2. 근육 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5. 소화기계통의 질환, 6. 순환기계통의 질환, 7. 신경계통의 질환, 8. 신생물 질환, 9. 저출산·불임 관련 질환, 10. 정신 및 행동장애, 11. 치의학 질환, 12. 호흡기계통의 질환, 13. 기타 상기 특정분류에 포함되지 않거나, 여러 질환의 공통적인 연구(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혈액학 등)

□ 지원기간 및 규모

- 연간 15억원 이내, 5년(3년+2년) 이내 지원
 - ※ 단, 1차년도는 연구비 10억 이내, 연구기간 8개월 이내 지원

지원경쟁률,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15년 5월 8일(금) 사업공고
- '15년 6월 19일(금) 전산입력 마감
- '15년 6월 23일(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 '15년 6월 5주~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선별심사
7월 1주차 - 평가단위 및 과제평가단 구성
- '15년 7월 2~3주차 서면-구두-현장평가 실시
- '15년 7월 4주차 - 전문위원회 개최
 - 신규과제 예비선정 공고
- '15년 8월 1일(토) 과제 협약 및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평가 및 선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 전산입력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함(접수마감 시간 이후 수정 불가)
- ※ 우편접수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송함

Ⅱ.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1 추진 방향

- 유효성평가 인프라 및 역량 고도화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 임상적 유용성 중심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지원·확대
 - HT/BT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상적 유용성 관점의 유효성평가 지원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유효성평가 기법의 개발과 확산으로 HT/BT R&D 성과 창출 가속화
 - 다양한 유효성평가모델과 기법 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유효성 평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글로벌 유효성평가 프로젝트 유치 및 국내 제품의 국외진출 촉진 등 국내 유효성평가 서비스의 질적 위상 제고

- 수요자 지원 확대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사업 관리
 - 공급자 - 수요자 간 연계 확대 및 효과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서비스 수요 발굴, 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상시적 성과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등 실시
 - T2B 기반구축사업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 * (운영위) 센터 간 조율·협력, 서비스 수요 연계 / (자문위) 사업화 전략 자문, 기술검토 등

-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타 사업과의 협력·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연구개발성과 단절 해소를 위해 타 사업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사업, 미래부 등 타부처 지원사업 등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유효성평가센터의 강점을 각각 활용해 특성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요자 상호 의뢰 등 협력 확대
 - * (실험동물센터) 중대형동물 중심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표준 프로토콜에 의한 유효성평가
 - * (T2B 기반구축센터) 임상적 유용성 관점의 In vivo 유효성 평가 서비스 제공

□ 지원목적

- 개방형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통해 HT/BT 연구성과의 제품화 단절 현상을 해소하여 실용화 촉진
 - 글로벌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기반구축을 통한 국내 보건 의료산업 제품의 국외진출 촉진 및 해외 유효성평가 수주 확대

□ 지원분야

- HT/BT 연구성과의 제품화를 위한 초기 비임상 유효성평가 단계의 집중 지원
 - (지원분야) 보건의료산업 분야(신약, 의료기기, 기능성제품 등)
 - (연구분야) 신약 후보물질의 치료효과 검증, 진단용 의약품(바이오마커 포함)의 유효성평가, 초기 시제품 형태의 의료기기 유효성평가, 기능성식품·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 효능 평가
- 주요 13개 질환분야 중 1개 질환 분야를 선택

1. 감염성 질환, 2. 근육 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5. 소화기계통의 질환, 6. 순환기계통의 질환, 7. 신경계통의 질환, 8. 신생물 질환, 9. 저출산·불임 관련 질환, 10. 정신 및 행동장애, 11. 치의학 질환, 12. 호흡기계통의 질환, 13. 기타 상기 특정분류에 포함되지 않거나, 여러 질환의 공통적인 연구(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혈액학 등)

□ 지원내용(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을 제시)

- 글로벌 수준의 특화 질환 유효성평가 플랫폼 구축
 - 유효성평가 시스템 구축의 고도화
 - GLP 수준에 준하는 유효성평가 시스템 구축
 - 유효성평가 프로세스의 SOP 구축

- 유효성평가 결과의 Feedback System 구축
-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임상의의 질적·양적 참여 수준
- 글로벌 수준의 질적 관리
 - 유효성평가 결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Document System 확립
 - 질환 중심 유효성평가 관련 기술자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포함)
- 고난이도 유효성평가 중심의 서비스 시행
 - 기업 및 연구자의 Unmet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일반 CRO에서의 한계가 있는 질환 특이적인 유효성평가 서비스 등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산·학·연 및 의료기관 모두 가능
 -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 및 연구기관(국·공립 포함)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은 '주요 13개 질환분야' 중 1개의 질환으로 단일지원만 가능(타 질환으로 중복지원 불가)
-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수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동 과제는 세부과제를 구성하지 않음

□ 지원규모

- 연간 15억원 이내, 5년(3년+2년) 이내 지원
 - * 단, 1차년도는 연구비 10억 이내, 연구기간 8개월 이내 지원

□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 단계별 연구목표

- (1단계) GLP 수준에 준하는 특화 질환 유효성평가 시스템 구축, 유효성평가 결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Document System 확립
- (2단계) 유효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국내 제품의 국외 진출 1건 이상, 국외 기업의 유효성평가 수주 1건 이상

* 선진국 규제기관(FDA, EMA 등) 인허가 서류 제출자료의 기여도 평가

○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는 센터가 자율적으로 제시)

직접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효성평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효성평가 서비스 건수 및 계약금 · (국내/외) 특화 질환 유효성평가 서비스 건수 및 계약금 - GLP 수준에 준하는 검증된 유효성평가 모델 확립 건수 - 질환 특화 신규 평가모델 개발 및 검증 건수 - 총 정부출연금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지원 비율 - 유효성평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
후속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임상진입 성공 건수 - 기술이전 - 제품화(신약,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기능성식품 개별인증 등 포함)

* 기타 센터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율적 지표 제시 가능(단, 논문성과 관련지표는 평가 시 반영비율을 최소화)

□ 특기사항

-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동일 대학 (동일 의료재단 및 대학 소속 병원 포함)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유효성평가 서비스 내용 중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활용에 따른 연구비 사용 제한 : 복지부 지원 「신약개발 바이오이미징 융합기술센터」와의 연계를 권고함
- 정부출연금 사용 제한사항
 - 유효성평가 서비스 비용으로 총 정부출연금(간접비 제외)의 70% 이상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간접비는 총 정부출연금의 10% 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주관(또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을 과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접수 불가)
- 지자체(광역 및 기초단체 포함) 및 주관연구기관의 지원(대응자금지원, 전용 공간 지원, 행정인력 지원 등) 계획이 있을 시 협약서 첨부
- 과제선정 후 지원비용 및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신청 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서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의 하향조정은 불가

□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센터'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센터								
과 제 명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과제명은 '해당연구'와 '질환'이 명시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15억원 이내, 5(3+2)년 이내 지원 ※ 단, 1차년도는 연구비 10억 이내, 연구기간 8개월 이내 지원								
<p>▶ 연구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통한 HT/BT 연구성과의 제품화 단절 현상 해소 및 실용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기반구축을 통한 국내 보건의료산업 제품의 국외진출 촉진 및 해외 유효성평가 수주 <p>▶ 단계별 연구목표</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P 수준에 준하는 특화 질환 유효성평가 시스템 구축 ▪ 유효성평가 결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Document System 확립 </td> </tr> <tr> <td>2단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국내 제품의 국외 진출 1건 이상 ▪ 국외 기업의 유효성평가 수주 1건 이상 </td> </tr> </table> <p>▶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는 센터가 자율적으로 제시)</p> <table border="1"> <tr> <td>직접적 성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효성평가 서비스 ▪ GLP 수준에 준하는 유효성평가 모델 확립 건수 ▪ 질환 특화 신규 평가모델 개발 및 검증 건수 ▪ 총 정부출연금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지원 비율 ▪ 유효성평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 </td> </tr> <tr> <td>후속 성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임상진입 성공 건수 ▪ 기술이전 ▪ 제품화(신약,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기능성식품 개별인증 등 포함) </td> </tr> </table> <p>* 기타 센터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율적 지표 제시 가능(단, 논문성과 관련지표는 평가 시 반영비율을 최소화)</p>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P 수준에 준하는 특화 질환 유효성평가 시스템 구축 ▪ 유효성평가 결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Document System 확립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국내 제품의 국외 진출 1건 이상 ▪ 국외 기업의 유효성평가 수주 1건 이상 	직접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효성평가 서비스 ▪ GLP 수준에 준하는 유효성평가 모델 확립 건수 ▪ 질환 특화 신규 평가모델 개발 및 검증 건수 ▪ 총 정부출연금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지원 비율 ▪ 유효성평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 	후속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임상진입 성공 건수 ▪ 기술이전 ▪ 제품화(신약,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기능성식품 개별인증 등 포함)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P 수준에 준하는 특화 질환 유효성평가 시스템 구축 ▪ 유효성평가 결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Document System 확립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국내 제품의 국외 진출 1건 이상 ▪ 국외 기업의 유효성평가 수주 1건 이상 								
직접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효성평가 서비스 ▪ GLP 수준에 준하는 유효성평가 모델 확립 건수 ▪ 질환 특화 신규 평가모델 개발 및 검증 건수 ▪ 총 정부출연금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지원 비율 ▪ 유효성평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 								
후속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임상진입 성공 건수 ▪ 기술이전 ▪ 제품화(신약,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기능성식품 개별인증 등 포함) 								
<p>▶ 지원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BT 연구성과의 제품화를 위한 초기 비임상 유효성평가 단계의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분야) 보건의료산업 분야(신약, 의료기기, 기능성제품 등) - (연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 후보물질의 치료효과 검증 · 진단용 의약품(바이오마커 포함)의 유효성평가 · 초기 시제품 형태의 의료기기 유효성평가 ·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 효능 평가 ○ 주요 13개 질환분야 중 1개 질환 분야를 선택 <table border="1"> <tr> <td> 1. 감염성 질환, 2. 근육 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5. 소화기계통의 질환, 6. 순환기계통의 질환, 7. 신경계통의 질환, 8. 신생물 질환, 9. 저출산·불임 관련 질환, 10. 정신 및 행동장애, 11. 치의학 질환, 12. 호흡기계통의 질환, 13. 기타 상기 특정분류에 포함되지 않거나, 여러 질환의 공통적인 연구(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혈액학 등) </td> </tr> </table> 		1. 감염성 질환, 2. 근육 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5. 소화기계통의 질환, 6. 순환기계통의 질환, 7. 신경계통의 질환, 8. 신생물 질환, 9. 저출산·불임 관련 질환, 10. 정신 및 행동장애, 11. 치의학 질환, 12. 호흡기계통의 질환, 13. 기타 상기 특정분류에 포함되지 않거나, 여러 질환의 공통적인 연구(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혈액학 등)							
1. 감염성 질환, 2. 근육 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3.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5. 소화기계통의 질환, 6. 순환기계통의 질환, 7. 신경계통의 질환, 8. 신생물 질환, 9. 저출산·불임 관련 질환, 10. 정신 및 행동장애, 11. 치의학 질환, 12. 호흡기계통의 질환, 13. 기타 상기 특정분류에 포함되지 않거나, 여러 질환의 공통적인 연구(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혈액학 등)									
<p>▶ 지원내용(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의 특화 질환 유효성평가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성평가 시스템 구축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P 수준에 준하는 유효성평가 시스템 구축 									

- 유효성평가 프로세스의 SOP 구축
 - 유효성평가 결과의 Feedback System 구축
 -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임상적의 질적·양적 참여 수준
 - 글로벌 수준의 질적 관리
 - 유효성평가 결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Document System 확립
 - 질환 중심 유효성평가 관련 기술자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포함)
- 고난이도 유효성평가 중심의 서비스 시행
 - 기업 및 연구자의 Unmet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일반 CRO에서의 한계가 있는 질환 특이적인 유효성평가 서비스 등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산·학·연 및 의료기관 모두 가능
-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 및 연구기관(국·공립 포함)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은 ‘주요 13개 질환분야’ 중 1개의 질환으로 단일지원만 가능(타 질환으로 중복지원 불가)
-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수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동 과제는 세부과제를 구성하지 않음

▶ **특기사항**

-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동일 대학(동일 의료재단 및 대학 소속 병원 포함)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유효성평가 서비스 내용 중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활용에 따른 연구비 사용 제한 : 복지부 지원 「신약개발 바이오이미징 융합기술센터」와의 연계를 권고함
- 정부출연금 사용 제한사항
- 유효성평가 서비스 비용으로 총 정부출연금(간접비 제외)의 70% 이상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간접비는 총 정부출연금의 10% 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주관(또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을 과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접수 불가)
- 지자체(광역 및 기초단체 포함) 및 주관연구기관의 지원(대응자금지원, 전용공간 지원, 행정인력 지원 등) 계획이 있을 시 협약서 첨부
- 과제선정 후 지원비용 및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신청 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서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의 하향조정은 불가

※ 그 외 상세사항은 해당 사업설명 참조

Ⅲ. 신청요건 및 방법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92호, 2015.2.10)>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92호, 2015.2.10)>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주관 및 공동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연구기관의 임면권자(대학총장, 대표이사 등)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선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야 함

2) 가산점 부여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기획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표지의 '가산점 신청여부'란에 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우수연구자 가산점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적용방식 : '최우수' 등급과제 판정 후 3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는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 공지함

3) 참여제한 및 신청제한

□ 참여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15. 8. 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 모든 신청과제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에 있는 과제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제한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주관 및 공동 연구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는 탈락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잔여연구기간의 인정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15. 6. 19(금))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4) 연구개발 성과의 등록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논문 성과의 등록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출된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정보의 확산 및 활용 촉진

※ 관련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중 논문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의 접근성 촉진을 위하여 논문의 공개 및 공유 전담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을 지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3조제2항)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협약된 과제에서 산출된 논문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의과학지식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는 제출된 논문의 원고(full text)를 Korea PubMed Central(Korea PMC)에 보존하고, 해당 논문의 공식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할 계획임
 - ※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원문 보존 및 공개시스템인 PubMed Central(PMC)을 중심으로 한 PMC International 네트워크에 Korea PubMed Central(<http://library.nih.go.kr>)로서 참여
 - 제출되는 논문은 전문가 심사(peer-reviewed)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으로서 게재 확정 후 최종원고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되어야 함
- Korea PMC로의 논문 제출은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가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정책 및 Korea PMC 참여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오픈 액세스 학술지이고 Korea PMC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예: Cancer, Human Genomics 등)에서 최종논문을 제출하므로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저자가 오픈 액세스(예: Springer Open Choice 참여 학술지 등)를 선택할 경우 해당 학술지 또는 출판사와 계약 체결시 Korea PMC 또는 연구비지원기관의 공적 리포지터리로의 등록을 선택함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해당 학술지 또는 출판사와 계약 체결 시 해당 원고가 Korea PMC에 등록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Korea PMC의 원고제출시스템(<http://library.nih.go.kr/ncmik>)을 통하여 저자 또는 학술지(출판사)측에서 논문의 최종원고를 제출함
- ※ 관련문의 :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의과학지식센터(☎ 043-249-3000)

논문성과에 대해서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원고제출을 하고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htdream.kr>)에 Korea PMC에서 발행한 원고제출확인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함

5)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유의사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 실시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장비사전검토항목’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출(예비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외)
 - ※ 참여기업부담금이 포함되어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경우, 구축비용 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이거나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임
- 장비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장비도입 심사 대상(변경)일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향후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
 - 계속과제 중 차기년도 정부출연금으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의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매년 6~7월 예정)
 - ※ 심의에 해당하는 장비가 심의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장비를 구축할 수 없음
 - ※ 자세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 ※ 장비사전검토항목 및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의 양식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첨부서류 참조

1) 신청 전 숙지 사항

- 신청 연구자는 원하는 각 지원분야의 세부 신청요건 및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특히 지원규모, 기간 및 선정평가 방법 등(지원 후 변경 불가)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성실한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관련문서의 제출을 협약 시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연구수행에의 전념)를 준수하여야 함(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규선정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탁정산실시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관 : 전문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
 - 회계감사비용 사항
 - ① 연구개발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집행
 - ② 단계별 적용 :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적용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서 연구개발 계획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서식 > 2015년도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연구개발계획서 간소화의 일환으로 첨부서류는 예비선정공고 후 7일 이내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약개발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의 성과실적 등 지원자격을 증빙하는 첨부서류는 반드시 수정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RFP)의 특기사항에 명시된 필수서류는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 체크한 첨부서류 리스트와 제출된 서류가 다를 경우, 과제선정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연구비 산정

□ 연구비 산정

-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별첨 1. 2015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연구비를 산정하여야 함

※ 연구비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최종 지원연구비 결정 시 삭감하여 지원함

□ 참여기업부담금

-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2.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3.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4. 참여기업이 2개(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5.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6.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7. 그 밖의 경우 :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
1.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 이상
 2.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 이상
 3.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 이상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 경우에는 70% 이내

- 정부 지원연구비가 과제접수 시 신청한 금액보다 삭감 되더라도 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참여기업부담금은 삭감할 수 없음

4) 신청요령

□ 신청절차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을 통한 전자접수
 - 연구개발 정보(과제구성, 연구내용, 참여연구원, 연구비 등) 전산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한글파일, *.hwp) 작성 및 전산 업로드
 -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서식 > 2015년도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전산 입력한 연구개발 정보와 업로드 한 연구개발계획서의 합본 파일(*.pdf)을 출력하여 제본
 - ※ 스프링 제본 금지
 -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혹은 날인) 및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 된 제본용 연구개발계획서 10부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전자인증(공인인증서)을 통한 최종 접수완료
 - ※ 전자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공문 필수
- 전산입력 안내
 - 과제접수 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므로 전산입력 전 반드시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전산입력 과정을 선행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입력사항 서식 부분은 삭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모든 공식자료가 작성되므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기한엄수 요망)

프로그램	전산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전자인증)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15. 6. 19(금), 12:00	'15. 6. 23.(화), 18:00

※ 전산입력 마감 후 수정이 불가능하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기한 이후 도착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송함

- ※ 전산접수 마감일경에는 전문기관의 중앙 전산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전산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전산접수 마감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전문기관의 서버에 접속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전산 접속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요망
- ※ 전문기관에서의 전산입력 대행은 불가능함

IV. 평가방법 및 관리

1) 사전선별 심사

□ 전문기관 사전선별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율 계상, 과제 구성요건, 해당 첨부서류 목록, 기업부담금 등의 검토
- 사전선별 심사 후 평가대상 과제 결정 (전문기관 사전선별 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 부여하나 자료요구마감일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탈락 처리됨)

2) 단계별 평가절차

□ 3단계 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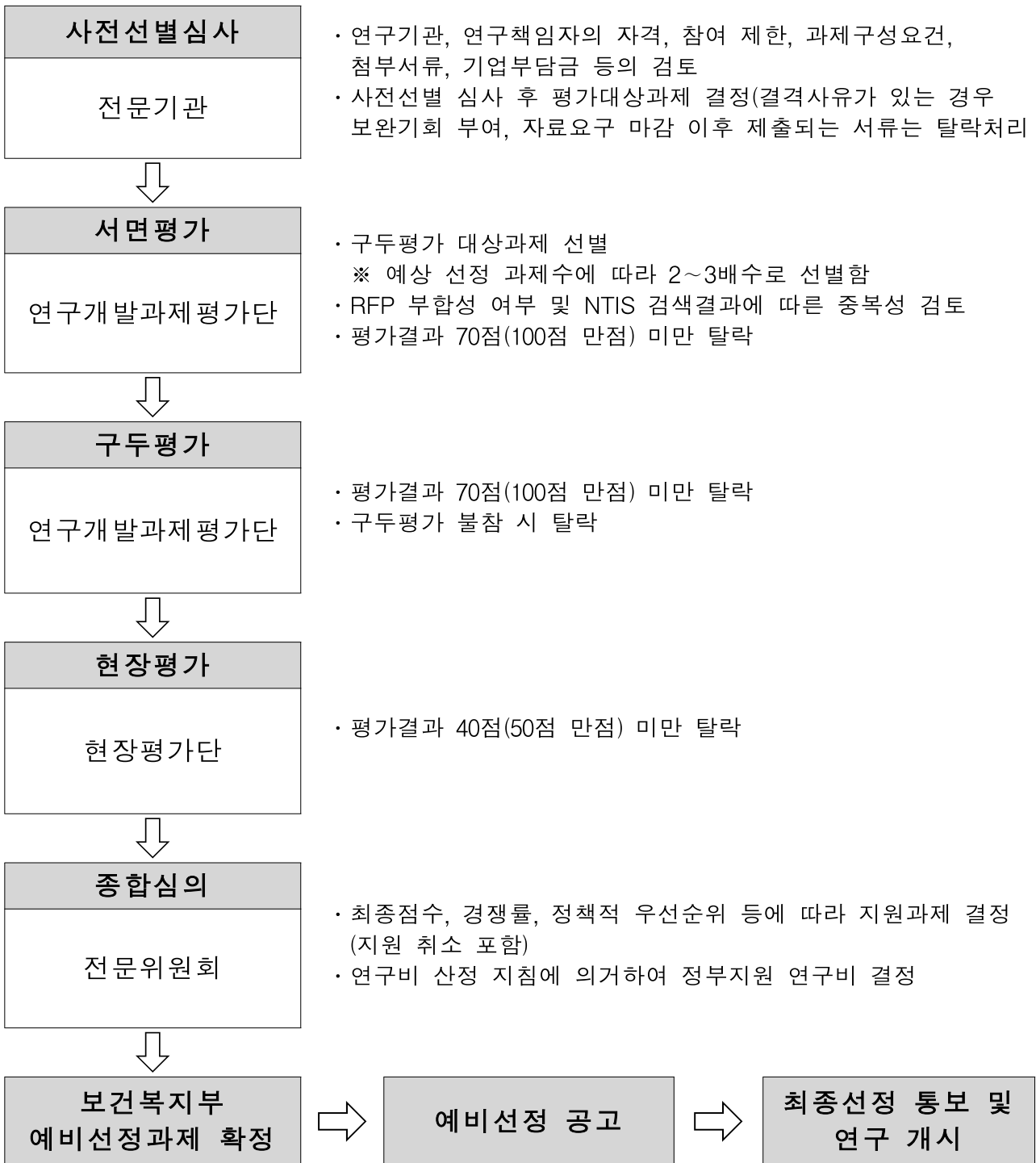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구두평가 ⇨ 현장평가 ⇨ 종합심의

3) 평가점수 계산방식

서면평가 결과	구두평가 결과	현장평가 결과	최종점수
A	B	40점 이상 (50점 만점)	$(A \times 0.3) + (B \times 0.7) + C$

- ※ 서면평가점수(A), 구두평가점수(B), 가산점(C)
- ※ 각 점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부여한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점수 산출
- ※ 현장평가점수는 최종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나 40점(50점 만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점수에 상관없이 자동 탈락되며, 현장평가단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4) 평가절차



※ 예비선정공고 기간 실시내용

- 중복대상으로 이의제기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과제 처리방안에 따라 처리
- 해당 첨부서류 미제출자는 탈락처리
- 선정 후 현장실사 대상과제는 실사를 통해 구두발표 시 내용과 다른 것이 발견 될 경우는 탈락처리

5) 주요 평가기준

프로그램명	평가기준	
	서면 및 구두평가	현장평가
보건의료 T2B (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연구개발 내용의 우수성 ○ 연구역량의 우수성 ○ 추진체계 적절성 ○ 성과계획의 우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의 육성의지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환경 등

1) 협약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 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연구기관 변경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소형개별연구인 경우에만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가능함. 이 경우 다른 연구책임자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가능

2) 중간평가

□ 연차실적·계획의 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를 해당년도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차년도 연구지원 여부 및 지원연구비를 확정함

□ 단계실적·계획의 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이고 단계로 구분

되어 있는 과제에 대하여 「단계실적·계획서」를 해당년도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차년도 연구지원 여부 및 지원연구비를 확정함

□ 현장방문

- 전문기관은 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전문기관은 이를 제출 받은 후 「최종보고서」 평가를 시행함. 다만,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목표 달성 시까지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행정제재 및 감점여부 결정

- 게재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

3)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체 보안관리 규정 제정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 시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및 위반 시 조치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관리 조치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및 관련법규를 준용함

4) 연구노트 관리

□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준수

- 연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자체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을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함
-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및 소속기관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름
 -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연구노트의 작성을 중단할 경우 해당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연구노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및 관련법규를 준용함

5) 연구성과의 관리 및 평가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과제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시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시점, 총 연구기간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 즉 사업화, 기술료,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등을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함

□ 연구성과 활용현황의 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성과 활용현황」을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필요시 최장 5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작성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제품화, 기타 시제품, 특허출원/등록증사본 등)과 이의 활용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성과의 홍보

- 전문기관이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하여 연구발표회 참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에도 발표내용을 전문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함

- 특히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표기해야 함

< 논문 >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예시 : HI15C1234).”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HI15C1234).”

< 특허 >

- 특허 출원 시 해당 특허 창출에 기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정보*를 기입하도록 관련법령**에 의무화됨
 - * 과제정보 기재항목 :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NTIS),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 한국지식재산전략원(<http://www.ndip.re.kr/>)
 - ** 관련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6항, 「특허법 시행 규칙」 서식 14 특허출원서
- 연구종료 전·후, 연구성과 발생(특허 출원·등록, 논문게재 등)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 수시 입력함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접수장소

(363-700)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신약개발지원팀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 참조

○ 문의처

【별첨 3】 분야별 담당자 안내 참조

【별첨 1】

2015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① 인건비	<p>【사용용도】</p> <p>○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인건비 정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의</th> </tr> </thead> <tbody> <tr> <td>내부 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td> </tr> <tr> <td>외부 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td> </tr> </tbody> </table> <p>【계상기준】</p> <p>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인건비 산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세 부 산 정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td> <td>연봉제 적용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td> </tr> <tr> <td>연봉제 미적용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 </tr> <tr> <td colspan="2">기타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율 </td> </tr> </tbody> </table> <p>※ “해당 과제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p>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율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금액 × 참여율 																	

직접비	① 인건비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p> <p>※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p> <p>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p> <p>※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p> <p>※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 (미지급인건비 계상)</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p> <p>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 ※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사.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p> <p>【참고사항】</p> <p>○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 : 수행기관 급여기준 × 참여율 ○ 참여연구원 변경 : 연구수행기관 내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 결재 문서 등을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p> <p>【불인정 사항】</p> <p>○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거나 미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7금액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p>
-----	----------	--

직접비	② 학생 인건비	<p>《계상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p> <p>【사용용도】</p> <p>○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계상기준】</p> <p>○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p> <p>○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 아래의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p> <p>① 학사과정 : 월 1,000천원 ② 석사과정 : 월 1,800천원 ③ 박사과정 : 월 2,500천원 ④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p> <p>【참고사항】</p> <p>○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p>
	③ 연구 장비 · 재료비	<p>【사용용도】</p> <p>1. 연구시설·장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설치)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조성비 등 포함)</p> <p>2. 재료비·전산처리비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p> <p>3. 시제품 제작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계상 가능하며, 자체제작할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에 등에 반영</p> <p>【계상기준】</p> <p>○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참고사항】</p> <p>○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 운영 - 예산집행시점에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 심사평가 ○ 3천만원 이하(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 비치할 것</p>

<p>직접비</p>	<p>③ 연구 장비 · 재료비</p>	<p>○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관리강화) ※ 정산 시 해당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 첨부</p> <p>○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당해연도 해당과제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완료 및 과제종료 2개월전 구입 과 설치 완료)</p> <p>○ 현물 산정기준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 수행기관 장부가의 20퍼센트를 산정 -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 생산·판매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p> <p>【불인정 사항】</p> <p>○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직전 혹은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p> <p>○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동연구환경 구축비</p> <p>○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p> <p>○ 해당과제의 연구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 및 합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비 및 재료비</p> <p>○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불인정 사항이 아님</p> <p>○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p> <p>○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p>
	<p>④ 연구 활동비</p>	<p>【사용용도】</p> <p>1. 국외여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p> <p>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위탁정산수수료 포함) 등</p> <p>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회의수당 포함),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p> <p>4.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비임상·임상시험비는 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써, 당초계획 대비하여 비임상·임상시험비의 예산의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전문기관(진흥원 과제담당자)에 문의 후 진행.</p> <p>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p>

직접비	<p>④ 연구 활동비</p>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규모(협약시 현금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 <table border="1" data-bbox="459 748 1417 1084"> <thead> <tr> <th>연구개발비 규모</th> <th>정산수수료</th> <th>연구개발비 규모</th> <th>정산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0.5억 미만</td> <td>440천원</td> <td>5억 이상 10억 미만</td> <td>944천원</td> </tr> <tr> <td>0.5억 이상 1억 미만</td> <td>484천원</td> <td>10억 이상 20억 미만</td> <td>1,185천원</td> </tr> <tr> <td>1억 이상 2억 미만</td> <td>545천원</td> <td>20억 이상 30억 미만</td> <td>1,304천원</td> </tr> <tr> <td>2억 이상 3억 미만</td> <td>654천원</td> <td>30억 이상 50억 미만</td> <td>1,435천원</td> </tr> <tr> <td>3억 이상 5억 미만</td> <td>800천원</td> <td>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이월과제의 경우 협약액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과제(위탁과제 제외)수에 따른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세부) 1과제 : 가산금 없음 - 세부 1개기관(과제) 추가시 정산수수료의 5퍼센트 가산 ※ 사업단의 경우 총괄과제별로 정산수수료 책정하고 세부과제수에 따른 가산금 책정 <p>○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p>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185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30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43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185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30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43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																								
<p>⑤ 연구 과제 추진비</p>	<p>【사용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여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3. 회의비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4. 연구과제 수행식대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직접비	<p>⑤ 연구 과제 추진비</p>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식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연구과제 수행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직접비	<p>⑥ 연구 수당</p>	<p>【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인정(당초예산 준용)하며, 감액한 경우는 실지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p>【불인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p>7</p> <p>위탁연구 개발비</p>	<p>【사용용도】</p> <p>○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p> <p>【계상기준】</p> <p>○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참고사항】</p> <p>○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원래계획 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의 예산(총액)의 변경시 과제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p>
<p>간접비</p>	<p>8</p> <p>간접비</p> <p>8</p> <p>간접비</p>	<p>【사용용도】</p>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간접비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p>【계상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 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p>【참고사항】</p> <p>○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p>【불인정 사항】</p> <p>○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불인정</p>
-----	---

※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럿플랜트 제작 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우 시 제외)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등), 세미나 개최비 ○ 외부시험 분석료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 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 기술도입비 ○ 내부 시험분석료, ○ 기술정보수집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 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퍼센트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협약체결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별첨 3】 업무별 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정선미 (신약개발지원팀)	043-713-8678 smjung12@khidi.or.kr
전산입력	배영신 (연구성과정보팀)	043-713-8238 sin7382@khidi.or.kr
	김창민 (연구성과정보팀)	043-713-8297 bulpae@khidi.or.kr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 고객지원 > 참여공간 > 질의응답
메뉴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